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투자 여력 보완 및 필수 사회기반 시설의 조기 확충을 통한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이 중요하므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적극적 보증공급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민간투자사업비가 7,0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등 개별사업 규모에 비해 신용보증 한도가 작아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 금리 상승으로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 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보증의 한도)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월)에 따라, 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비상설 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인바, 시행령 상 불필요하게 된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가 있더라도 위원회 비상설화 시행 시기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의 보증한도를 기존의 7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제29조제2항제1호)

- 1)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여 사업당 보증한도를 기존 7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

나.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제34조의8제5항 및 제34조의8제6항을 삭제)

- 1)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비상설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

다. 기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법 시행(‘24.1.19.)에 맞춰 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7천억원”을 “1조원”으로 한다.

제34조의8제5항과 제34조의8제6항을 삭제하고 제34조의8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 전 위촉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사업 시행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에 종료하며, 이 영 시행일에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조정 절차 종료 시 임기가 종료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보증의 한도) ①(생략)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전채무(제2호의 금전채무는 제 외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u>7천억원</u> 제34조의8(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4조의4 제1항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위 원(이하 이 절에서 “정부위원”이 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및 사회기 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 재정 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사 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사업시행자위원”이 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추천 하는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 한다.	제29조(보증의 한도) ①(현행과 같 음) ② ----- ----- ----- ----- -----. 1.----- -----: <u>1조원</u> 제34조의8(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 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공익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공익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18.> 1.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지났을 것 2. 민간투자사업의 설계·건설·자금조달 또는 운영 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닐 것	④ (현행과 같음)
⑤ <u>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삭제)
⑥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삭제)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	⑤ (현행과 같음)

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영 시행 전 위촉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사업 시행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에 종료하며, 이 영 시행일에 진행중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조정 절차 종료 시 임기가 종료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457